대통령직속 농어업·농어촌 특별위원회

제10차 농어업분과위원회 결과 보고

1. 개요

□ **일시・방식** : 2021. 10. 14.(목) ~ 10. 19.(화) / 서면회의

○ **(결과확정)** 제11차 본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

□ **참석 인원** : 17명

○ **(분과위원장)** 이숙원 분과위원장

○ **(분과위원)** 18명 중 **16명 참석** * 불참 : 이무진, 임영환 위원

2. 서면회의 의견 취합 결과

□ **(심의안건) 공익직불제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개선(안): 의결 (可 17명, 否 없음, 기권 없음)**

○ 주요 의견

- 2017~2019년 이전에 해당 농지에서 **정상적인 농업활동이 수행되었음을 증명**하고 2017~2019년 기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이들을 **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**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됨.(김태연 위원)

- 지급대상 개선은 가짜 농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**농민에 대한 정의도 함께 정비**되기를 바람(박일진 위원)

- 농사를 지어 왔음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며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 등으로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하나, 건축용 등의 여타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농자재들이 있으므로 증명할 수 있는 농자재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야 함(윤금순 위원)

- **기존의 직접지불 신청 실적이 없다 하여 누락시키는 것은 이미 불합리한 조처인 동시에 농업인들의 영농의지를 꺾는 것**이므로 지급대상 개선안이 시급함(정은정 위원)

-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지의 기능을 더욱 높이고 농지의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이며, **농민들의 영농의식 고취와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에 있어 매우 합당한 개선안**으로서 적극 찬성함(엄청나 위원)

-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개정만 되는 것이 아닌 **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추가예산반영이 필요**함(서용석 위원)

- 17~19년도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가의 경우 **증빙자료 제출 등 소명을 통해 지급대상으로 개선하는 것에 적극 찬성**하며, 2조4천억원을 **2024년까지 동결한 국가운용재정계획도 개선**될 수 있도록 해야 함(박종서 위원)

- **법 개정에 따른 대략적인 추가재원 규모나 향후 증가추이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같이 구축** 할 수 있기를 바라며,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**재원 추정값에 대한 자료를 농식품부와 농특위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** 할 것으로 판단 됨(김현아 위원)

-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 논농업(농지)만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조항에 밭농업(밭작물) 규정이 없다면 이것도 포함시켜야 할 것 임(최병문 위원)

- 17~19년 지급대상농지만 직불금 지급하는 것에 불만이 많으며, **공익직불금 외 농민·농촌 수당 등 중복지원에 대한 논의를 빨리 진행할 필요**가 있음(조병옥 위원)

-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농민들에게 **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하면 지급대상에서 포함**시켜야 함(최동근 위원)

- 기본직불제 설계 당시에는 부정수급 문제의 방지를 위하여 지급

요건을 강화한 측면이 있으나, **현재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정보가 축적**된 것으로 판단되며, **정당한 영농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, 추가로 지급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**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(박준기 위원)

- **청년귀농인 등 농업을 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고 전업농 자격을 취득한 농업인들이 현행 기준으로는 직불금을 못 받는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서 발생**하고 있으며, **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상호준수의무 등으로 공익직불제가 발전하기 위해 개선필요**(정연근 위원)

3. 상정 안건 확정

□ **(안건1) 공익직불제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개선(안)**

○ 분과위원 및 관계부처 제출의견 일부반영 안으로 상정

4. 향후 계획

□ 안건관련 관계부처 업무협의(10.21.)

○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 등

□ 제11차 농특위 본위원회(11.3) 안건 상정 및 대응

○ 심의안건 : 공익직불제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개선(안)

붙임 안건 의결 가·부 및 검토의견 제출 집계

		안건 가·부 사항	의견 유·무
이숙원		가	무
조병옥		가	유
박일진		가	유
박종서		가	유
최철원		가	무
박준기		가	유
서용석		가	유
윤금순		가	유
김현아		가	유
이무진		×	×
임영환		×	×
김태연		가	유
이기홍		가	무
최동근		가	유
최병문		가	유
김기홍		가	무
정연근		가	유
정은정		가	유
엄청나		가	유
집계	가 (있음)	17	13
	부 (없음)	0	4
	기권	-	